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068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이병도 의원외 24명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신설).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요

□ 사업개요

- 명칭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구성 : 2팀 11명(기관장 1명, 피해지원관 9명, 행정 1명)
- 운영방식 : 공기관 위탁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 운영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위탁기간 : '22. 2. ~ '25. 2. (3년) / ※ 센터 개관 : '22.3.29(화)
- 운영내용 : 전화 한 통화로 일상회복까지 원스톱지원 운영
 - 상담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 신설(www.8150382.or.kr, ☎ 815-0382)
 - 삭제지원 : 경찰청‘불법촬영 추적시스템’연계 및 AI 삭제지원 시스템 구축
 - 법률지원 : 디지털성범죄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소송 지원 운영
 - 심리지원 : 전문 심리치료사 연계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제공

피해시민 의뢰	사건 설계	지원내용	영상물 삭제	일상회복
피해시민 사건 의뢰 (전화·메일·카카오톡· 온라인게시판)	피해지원 설계 (수사·법률지원, 상담, 의료지원, 삭제지원, 지원연계 등)	1:1 밀착 지원 단계별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피해시민이 필요한 지원 연계

□ 추진실적('23.7월말 기준)

- '22년 6,241건(9개월, 월 693건) → '23년 9,831건(7개월, 월 1,404건)
(단위: 건)

연도	피해자원 설계 모니터링	수사법적 지원	삭제 지원	상담 지원	전문 심리상담	의료 지원	타기관 연계	피해시민 정보제공	계
2022 (4월~12월)	1,073	1,060	2,509	926	453	31	108	81	6,241
2023 (1월~7월)	1,198	2,973	2,631	1,241	893	119	133	643	9,831

2 주요사항 검토

□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신설) 및 운영 위탁(안 제11조)

-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 제7조 각호의 사업¹⁾을 수행하고자 같은 조례 제11조의 위탁운영 규정²⁾에 따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안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개정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센터 조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 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
- 1)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 의료 · 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제9조 · 제10조</u> (생 략)	<p><u>및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u> <u>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u> <u>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u></p> <p><u>제10조 · 제11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p>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안심지원센터’가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바,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심지원센터 운영사항의 위탁(안 제12조)

- 개정안은 안 제9조에 따른 ‘안심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u>제11조</u>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제7조에 따른 <u>사무의 전부</u>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	<u>제12조</u> (사무의 위탁) ① ----- ----- ----- ----- <u>사무 및 제9조의</u> <u>운영사항</u> -----

현 행	개 정 안
<p>는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 방식³⁾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⁴⁾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과 같은법 제104조제3항⁵⁾에 따른 민간위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동 ‘안심지원센터’는 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
- 3)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15번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유형이 사무위탁(공기관 위탁)으로 기재되어 있음.
 - 4)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2023.3월)6)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사법상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민간 위탁 일반조례를 적용해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위탁사무 개별조례에 근거규정을 둔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제107조제2항에서 공공위탁의 수탁대상으로 규정한 공공단체에 지방출연기관이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안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공위탁으로 운영해야 하는 ‘안심지원센터’의 위탁근거를 개별조례에 규정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수탁자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6) 법제처(2023.3), “실무연구자료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위탁에 대한 실무적 검토” 「법제소식」, p.107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0월 개정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비교하면서 공공위탁의 계약방법인 수의계약에 대해 “개별조례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심지원센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시여 성가족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구분>

구분	민간위탁	공공위탁
개념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관할 자자체나 공공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 (법제처·행안부 질의회신) ※ 법률상 용어 정의 없음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예산 과목	민간위탁금(307-03)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사무 특성	민간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 경제성·효율성 추구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계약 방법	공개모집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 가능 (민간위탁 조례, 사무별 개별조례)	수의계약 (개별조례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5년)	별도 규정 없음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무의 특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탁관련 조문이 공공위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68
----------	------

발의년월일: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이병도,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인제,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유정인,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 9조 신설).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사무”를 “사무 및 제9조의 운영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u>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제9조 · 제10조 (생 략)</u>	<u>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u>
<u>제11조(사무의 위탁)</u>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u>사무</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u>제12조(사무의 위탁)</u> ① ----- ----- ----- ----- <u>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u> ----- -----. ② (현행과 같음)